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95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이재관 · 윤준병 · 주철현
권향엽 · 김승원 · 이수진
강준현 · 문진석 · 이상식
이정문 · 김원이 · 장철민
문대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구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위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

제) ①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원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지원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전환지원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원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u> <u>② 전환지원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u>

한다.

③ 전환지원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
여야 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handwriting practice, starting from the first line and continuing down the page.

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
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
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
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
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
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
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
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
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1. · 2. (현행과 같음)

3.

제 104 조 의 3

5, 제 104 조 의 37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illegible]

